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8

2019년 9월 6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19년 8월 7일

다.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라. 상 정 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3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위탁 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가출청소년의 보호·상담·선도·수련활동·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난곡동 646-222 1층 일부 및 2·3층

○ 시설규모 : 153.35m²(SH공사 매입임대다가구 임대)

○ 개소일자 : 2004. 08. 01

○ 이용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남, 정원 10명)

○ 보호기간 : 3년 이내 중장기보호

5) 위탁기간 : 3년 (2020.01.01 ~ 2022.12.31)

6)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 304,414천원

- 인건비 200,656천원, 사업비 91,324천원, 운영비 12,434천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관악구 난곡동)는 정원 10명으로, 남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2019.12.31.) 예정으로, 시의회 동의(2012.7.9.)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 운영

○ 시 설 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난곡동 646-222 1층 일부 및 2·3층

○ 시설규모 : 153.35㎡(SH공사 매입임대다가구 임대)

○ 개소일자 : 2004.8.1

○ 이용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남, 정원 10명)

○ 보호기간 :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위탁기간 : 3년 (2020.1.1 ~ 2022.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04,414천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 2020년 예산은 9억9천6백만원이며, 3년간(2020.1.1.~2022.12.31.) 청소년 단체간 경쟁방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할 예정으로, 평생교육국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의 민간위탁 현황 〉

○ 재계약 횟수 : 5 회, 총 수탁기간 : 15 년

- 2004.5.1.~2007.2.28. (재) 대한성공회유지재단 공모 선정
- 2007.3.1.~2010.2.28. (재)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계약
- 2010.3.1.~2012.12.31.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공모 선정
- 2013.1.1.~2014.12.31.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재계약
- 2015.1.1.~2017.12.31.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공모 선정
- 2018.1.1.~2019.12.31.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재계약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의 민간위탁금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민간위탁금	297,543	304,414	310,753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최근 3년간 3회의 지도·점검 및 평가를 받았으며, 인사(취업규칙 미신고, 직제와 다른 인력운영, 직원 승진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회계(법인카드 관리 비흡, 공공요금감액업무 소홀), 재산관리(물품검수 미이행, 재정보증없는자의 물품관리), 운영(내부규정 현행화 미흡, 안전훈련 미실시, 사무편람 미작성) 분야에서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한 수탁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탁을 받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와 함께, 단순히 가출 및 위기청소년의 보호실적이 아닌 상처 치유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잘 수 있는 밑거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지적사항 〉

- 정원(4인)외 취사원 1인을 계약직(1일 2시간)으로 채용하고 있고, 5급 정원이 1인인데도 6급 직원을 승진시켜 5급을 2인으로 운용하는 등 인력을 과도하게 운용하고 있음
- 인사위원회 미구성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없이 2018.02.01. 7급직원을 임용하는 등 종사자 임용관련 규정 미준수
- '16.7월 임용발령된 시설장이 수탁기관(법인)과 근로계약을 미체결하였고, 그 외 직원(2명)은 '16.7월 해당 시설로 발령된 후 수탁기관과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회계업무를 함에 있어 소속직원에 대한 회계수입·지출원 사전지정과 재정보험 가입 없이 소장만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 및 물품 관리
- 쉼터시설로 사용중인 2,3층(계량기 분리)중 3층에 한하여 전기, 가스요금감액 혜택을 받고 있으나 2층 사용 요금감액은 누락되고 수도요금은 수전분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감액혜택을 못 받는 등 공공요금감액업무 소홀
-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및 매출전료 사용자 미서명 등 관리 미흡
- 물품출납원 미지정 및 재정보증 없이 물품관리
- 시설 종사자와 보호 청소년 안전을 위해 분기별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8년도 모의훈련 미실시하였고 청소년건강을 위한 시설에 금연구역 미표시
-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연도별 사업목표는 불분명함
- 연도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목표, 사업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8년 근로지원서비스사업의 경우, 근로유지금으로 80만원을 책정하고 3개월, 6개월 장기 취업유지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년 취업계속 유지자 1명에 대한 자원봉사단체의 격려금 지급 전달식을 2회를 진행하면서 간식비로 48만원 지출하여, 사업의 당초 목적외로 예산의 60%를 집행함
- 사무별 구체적 사무편람은 미작성됨
- 시설평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연도별, 중장기 사업 목표의 측정 가능한 지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평가 수행은 적절하지 않음
- 사업에 대한 결과만 나열되어 있을뿐 결과에 대한 개선, 발전 방안 반영, 향후 발전방안 제시 등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시설 등과 MOU는 체결되어 있으며, 학교연계 사업도 계획되어 있으나, 운영은 미흡한 실정임
-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연차단위 구체적 홍보계획은 별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홍보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차년도 계획에 홍보결과를 환류하고 있지 않음
-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도출된 의견에 대한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반영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 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인력운영에 있어 신림단기쉼터와 금천단기쉼터가 수용인원이 같음에도 관련 규칙(「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과 달리 운영 인력 정원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쉼터의 경우, 원장, 생활지도사 2명(교대 근무), 상담사, 및 식당종사자를 포함하여 최소 운영인원은 5명 이상으로 보이나, 시행규칙상의 정원은 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생활지도사는 2명으로 1명이 부재(휴가 또는 결근) 시 다른 인원이 이를 대직하고 있는 실정임.

○ 단기쉼터와 중장기 쉼터는 법령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 조치를 할 수 없는바, 쉼터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과 단기 및 중장기 쉼터는 24시간 보호·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쉼터의 인력운영을 규정한 평생교육국의 시행규칙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의 쉼터 정원 〉

연번	정원 / 시설별	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기능	고용
29	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12	12	1	-	1	2	2	4	2	-	-	-
30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4	4	-	-	1	-	1	2	-	-	-	-
31	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10	10	1	1	1	1	3	2	1	-	-	-
32	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4	4	-	-	1	-	1	2	-	-	-	-

○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분은 우울, 과도한 공격성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겠음.

○ 쉼터의 지원은 학업, 자립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학용품 비용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 보장과 적정한 여가 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십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쉼터의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보강, 조직형태의 개선, 야간시간의 보호·관리 역량 강화,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의 분리 등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전문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행정사무와 위기청소년 보호·관리 사무의 분리 등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쉼터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설계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928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가출청소년의 보호·상담·선도·수련활동·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난곡동 646-222 1층 일부 및 2 · 3층

○ 시설규모 : 153.35m^2(SH공사 매입임대다가구 임대)

○ 개소일자 : 2004. 08. 01

○ 이용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남, 정원 10명)

○ 보호기간 :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위치도

마. 위탁기간 : 3년 (2020.01.01 ~ 2022.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304,414천원

- 인건비 200,656천원, 사업비 91,324천원, 운영비 12,434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 (☎2133-4128)